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정 보 통 신 공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을 부여하는데 있어 기술자격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및 교육이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급 또는 고급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 공사 분야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3.9.6～10.18(42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별표2 감리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특 급 감리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감리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감리원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이수하고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 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가.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마.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초·중등교육법」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정한다)에서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ㆍ전자ㆍ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를 "「비상대비에관한법률」제11조"로 한다.

별표5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기술자격자 교육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특급기술자	32시간 이상
	학력·경력자 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특급기술자	32시간 이상
			고급기술자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경력자 교육	별표 6에 따른 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56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등급 변경자 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급 또는 고급기술자로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20시간
감리원 인정교육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로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특급감리원	32시간 이상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ㆍ학력ㆍ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고급감리원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별표 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급 또는 고급감리원으로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20시간

비고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 전체 교육시간의 25퍼센트 이상
   나. 감리원 인정교육 : 전체 교육시간의 15퍼센트 이상
2.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의 경력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ㆍ경력자, 고급· 중급·초급·기능계기술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감리원 인정교육의 중급ㆍ초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고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

		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초·중등교육법」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 제11호 ----------.

<별표2> 감리원의 자격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경력자
특급감리원	기술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고급감리원	<신 설>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중급감리원	<신 설>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	1.~ 5. (생 략)	1.~ 4. (생 략)

<별표2> 감리원의 자격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경력자
특급감리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감리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삭제>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	

	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감리원	1.~ 2. (생 략)	1.~ 4. (생 략)	1.~ 4. (생 략)

비고
1 ~ 5. (생 략)

〈별표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떼어낸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1. ~ 4. (생 략)
5. (생 략)
가. (생 략)
1) (생 략)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감리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초급감리원	1.~2.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비고
1 ~ 5. (현행과 같음)

〈별표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임무고지된 업체의 경우(+3퍼센트)
3) ~ 4) (생 략)
나. (생 략)
1) ~ 7) (생 략)

<별표5> 인정교육의 실시기준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학력·경력자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경력자교육	별표 6에 따른 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56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등급변경자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20시간
감리원 인정교육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법 제8조제4항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임무고지된 업체의 경우(+3퍼센트)
3) ~ 4)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별표5> 인정교육의 실시기준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기술자격자교육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특급기술자	32시간 이상
	학력·경력자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특급기술자	32시간 이상
			고급기술자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경력자교육	별표 6에 따른 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56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등급변경자교육	별표 6에 따른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급 또는 고급기술자로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20시간
감리원 인정교육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로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	특급감리원	32시간 이상

	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별표 2에 따른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20시간

비 고

1. (생 략)
2.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의 경력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경력자 <신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감리원 인정교육의 중급·초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특급·고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고급기술자	<신 설>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고급 감리원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중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별표 2에 따른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급 또는 고급감리원으로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20시간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의 경력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경력자 고급·중급 초급 기능계기술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감리원 인정교육의 중급·초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고급감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신 설>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5. (생 략)	1.~ 4. (생 략)
초급기술자	1.~ 2. (생 략)	1.~ 4. (생 략)	1.~ 4. (생 략)

비 고

1 ~ 5. (생 략)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생 략)

비 고

1 ~ 5. (생 략)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삭제>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초급기술자	1.~2.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비 고

1 ~ 5. (현행과 같음)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현행과 같음)

비 고

1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네트워크정책과	
연 락 처	02-2110-6425